W - 4 - 2021

화학물질의 만성독성시험 기술지침

202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현 영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현 영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현 영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미 주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 은 상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 가 영

#### ○ 제정 경과

- 2010년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10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15년 5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7년 9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21년 11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## ○ 관련규격 및 자료

- OECD, OECD Guideline for the testing of chemicals. 2018 (TG 452, Chronic Toxicity Studies)
- 관련법규, 규칙, 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 및 관리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
-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-46호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

#### 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화학물질의 만성독성시험 기술지침

# 1. 목적

이 지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장기간 노출하였을 때 나타나는 생체의 기능의 변화 관찰 등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 및 관리), 시행규칙 제143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-4호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규정)에 의거 시험동물을 이용 만성독성시험방법 및 결과의 작성에 적용한다.

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만성독성"이란 랫드 또는 마우스 등을 이용, 시험동물에 시험물질을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반복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말한다.
- (나) "용량-반응 (Dose-response) 관계" 란 화학물질의 노출량과 생체에 인체에 작용하는 영향과의 양-반응 관계를 말한다.
- (다) "검체"라 함은 검사나 분석 또는 보관을 위해 시험계로부터 얻어진 것을 말한다.
- (라) "대조물질"이라 함은 시험물질과 비교할 목적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.

W - 4 - 2021

- (마) "회복군" 이라함은 본시험에서 시험물질 투여 완료 후 시험물질에 의한 독성변 화의 지연성과 회복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하는 시험동물군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4. 시험방법

### 4.1 시험동물

4.1.1 시험동물의 종류 및 성별

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은 기본적으로 설치류를 사용하며, 랫드,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랫드를 우선한다. 가능한 급성, 아급성 또는 아만성(90일 기준) 독성시험에서 이용한 같은 종류의 시험동물을 이용한다.

# 4.1.2 연령

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건강한 8주령 이내의 동물을 사용하며, 최소 7일 동안 순화기간을 가진다. 시험 시작 시 체중이 고른 것(평균체중의 ± 20%)을 사용한다.

#### 4.1.3 사용 동물 수

암수 모두 사용하며, 시험이 끝날 때 생물학적 및 통계학적 평가가 충분한 수의 동물을 사용한다. 설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시험군별 군 당 암수 각각 20 마리 이상의 동물을 사용하며, 비설치류인 경우 군마다 같은 성별로 최소 4 마 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. 그러나 중간 도살을 하여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수만큼 시험동물을 추가한다.

# 4.2 시험방법

4.2.1 시험농도 설정방법

시험물질의 노출농도와 시험동물의 생체에 미치는 용량-반응의 관계를 알기 위하 여일반적으로 노출농도는 3단계 이상으로 한다. 또한, 가능한 고농도에서는 사 망

W - 4 - 2021

동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험물질에 의한 독성영향이 나타나는 양을 최고농도로 하고, 최저농도는 시험기간 동안에 동물에 어떤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 농도로 하 며, 이의 중간 값을 중간농도로 설정 한다. 그리고 시험물질은 노출하지 않으나 동일한 조건에서의 노출군과 비교하기 위한 별도의 대조군을 둔다.

#### 4.2.2 시험물질 노출방법

원칙적으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취급시 신체의 노출 및 흡수경로를 고려 흡입노출(전신 또는 비부)을 중심으로 한다. 부득이 경구 노출의 경우 시험물질은 사료나 음료수에 첨가하여 노출하는 것이 시험동물에 부담을 줄여 주어좋다. 이때 사료에 첨가하는 시험물질의 농도는 5% (w/w) 이하로 한다. 또한 복강이나 경구투여의 경우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며, 흡입노출의 경우 근로시간을 고려 1일 6시간, 주 5일 반복하여 노출하며, 매일 일정한 시간에 노출함을 원칙으로 하다.

#### 4.2.3 시험물질 노출기간

시험물질 노출기간은 사용하는 시험동물과 시험목적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4.2.4 관찰 및 측정항목

시험 항목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관찰하고 측정한다.

## (1) 일반 상태 및 사망률

적어도 1일 1회 이상 임상적 관찰을 한다. 사망동물은 즉시 부검 또는 냉장 보관한다. 또 쇠약이나 빈사상태의 동물은 격리하거나 부검하여 원인을 확인한다. 사망 율은 물론 신경증상, 안구검사소견 등 모든 동물에 대하여 기록하고, 독성의발현시간이나 진행상태, 종양 유, 무에 관해서도 기록한다.

# (2) 체중, 사료 섭취량 및 물 음수량 측정

시험동물의 체중은 시험 개시 후 13주 까지는 주 1회, 그 이후는 적어도 4주 에 1회 이상 측정하며, 사료섭취량 또는 음수량 측정에 대해서는 시험물질을 사료 또는 음수에 섞어서 투여할 때에만 측정한다. 이때 시험 개시 후 13주 까지는 매주 측정하고, 그 이후는 건강상태와 체중에 변화가 없는 한 3개월 마다 1회 이상 측정한다.

W - 4 - 2021

# (3) 혈액검사

## (가) 혈액학적 검사

시험동물의 혈액을 이용하여 측정하며, 측정 주기는 투여 3개월 후, 6개월 후로 하며, 투여 6개월 이상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암, 수 최소 10마리 이상에 대해 실시한다. 혈액학적 지표는 적혈구 수, 백혈구 수(전체수 및 분율), 혈소판 수, 헤모글로빈 농도, 적혈구 용적치(침전된 세포의 부피), 평균 적혈구체적(MCV, Mean Corpuscular Volume), 평균 혈구 헤모글로빈(MCH, Mean Corpuscular Hemoglobin), 평균 혈구 헤모글로빈 농도(MCHC,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), 프로트롬빈 시간 및 활성트롬보플라스틴 시간 (APTT,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) 등을 포함한다. 하인즈 소체(Heinz body)나 다른 비정형 적혈구 형태 또는 메트헤모글로빈과 같은 다른 혈액학 지표들은 시험물질의 독성에 따라 적절히 추가하여측정할 수 있다.

# (나) 혈액생화학적 검사

시험동물의 혈액에서 분리한 혈청을 이용하며, 측정 주기는 투여 3개월 후, 6 개월 후이며 6개월 이상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암, 수 최소 10마리 이상에 대해 혈액을 채취하며 혈액 채취 전에 시험동물을 절식시키는 것이 좋다. 혈당, 유레아(요소 질소), 크레아티닌, 총 단백질, 총 콜레스트롤, 알부민, 칼슘, 나트륨, 칼륨, 2 개 이상의 간세포 평가지표(알라닌 아미노기 전이효소, 아스파테이트 아미노기 전이효소, 글루탐산탈수소효소, 총 답즙산), 2 개 이상의 간담도 평가지표(알칼린 포스파타아제,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, 5'-뉴클레오티다아제, 총 빌리루빈, 총 담즙산), 그 외의 지표는 시험물질의 독성에 따라 적절히 측정한다. 전반적으로 시험물질 노출에 의해 관찰 및/또는 예측되는 영향에 따라 유연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.

#### (4) 뇨 검사

혈액학 및 혈액생화학 지표 측정 시험과 동일한 간격으로 채집된 시료에 대해 군 당 암, 수 최소 10마리에 대해 실시한다. 외형, 부피, 삼투압 또는 비중, pH, 총 단백질 및 포도당, 케톤, 유로빌리노겐, 빌리루빈 및 잠혈 등을 포함하여 관측된 독성영향에 대한 조사를 확장하기 위해, 필요하다면 보다 정밀한 다른 임상생화학 지표를 측정할 수도 있다.

W - 4 - 2021

#### (5) 병리학적 검사

#### (가) 육안적 관찰 및 장기 중량 측정

시험에 사용된 모든 동물(도중에 사망하거나 도살한 동물 포함)을 부검하여 각 장기별 이상 유, 무를 육안관찰을 하고, 고정액에 고정시킨다.

또한 시험동물로부터 취한 뇌, 심장, 간, 비장, 신장, 부신, 부고환, 고환, 난소, 갑상선(부갑상선과 함께 측정 후 고정) 및 자궁에 대해 중량을 측정한다. 마우스를 사용하는 시험에서 부신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.

### (나) 조직학적 관찰

전자현미경적 혹은 광학현미경에 의한 병리 조직화학적 검사를 실시한다.

병리조직학적 검사는 아래의 장기에 대해서 실시하며, 최고 농도군과 대조군에 대해서 검사하는데, 고 농도군에서 조직학적 변화가 관찰된 장기에 대해서는 다른 농도군(중, 저 농도군)에서도 조직학적 관찰을 해야 하며, 특히 흡입노출의 경우 비강, 인두, 후두 및 기관지 등 호흡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쌍으로 있는 장기의 경우(예를 들어 신장, 부신), 두 개 모두 고정되어야 한다.

# <검사대상 장기의 종류>

그 외 병변부위, 심장, 췌장, 위(전위, 선위), 부신, 회장, 부갑상선, 치아(선택사항), 대동맥, 공장, 말초신경, 고환, 뇌(대뇌, 소뇌 및 수질/뇌교 부분포함), 신장, 뇌하수체, 가슴샘, 맹장, 눈물샘, 전립선, 갑상선, 간, 직장, 혀(선택사항), 응고선, 폐, 침샘, 기도, 결장, 림프절(표부와 심부),정낭, 방광, 십이지장, 유선(암컷에서는 필수, 수컷에서는 육안 해부 가능한 경우), 골격근, 자궁(자궁경부 포함), 부고환, 상기도(코, 비갑개 및 부비강 포함, 선택사항), 피부, 요관(선택사항), 눈(망막 포함), 식도, 척수(3단계: 경부, 중흉부 및 요추), 요도(선택사항), 관절포함 대퇴골(선택사항), 후각망울(선택사항), 비장, 질, 담낭(랫드 이외의 종), 난소, 흉골(선택사항), 골수 단면 및/또는 신선한 골수, 하더샘 등에 대해 실시한다.

#### (6) 기타 필요한 사항

시험 중 사망한 동물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조사한다. 또한 시험물질 투여기 간 중 임상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사망 직전에 있는 동물은 부검하여

W - 4 - 2021

원인을 확인하며, 기타 필요한 검사항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 사 할 수 있다.

# 4.3 시험결과 및 보고서 작성

# 4.3.1 최종보고서의 포함 내용

최종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(1) 시험의 종류,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에 관한 내용
  - (가) 시험제목
  - (나) 코드 또는 명칭(IUPAC, CAS번호 등)에 따르는 시험물질의 식별
  - (다) 화학물질 명에 의한 대조물질의 식별
  - (라) 순도, 안정성, 균일성을 포함한 시험물질의 특성
- (2) 시험재료와 시험방법
  - (가) 이용한 시험방법과 시험재료
- (3) 결 과
  - (가) 시험동물의 종/계통/공급원, 사료 및 환경조건
  - (나) 시험동물의 성별 및 농도군별의 반응성적표
  - (다) 시험기간 중에 사망 또는 도살된 동물수, 시간, 독성의 징후
  - (라) 사료 및 체중에 관한 자료

# KOSHA GUIDE W - 4 - 2021

- (마) 혈액학적 분석자료
- (바) 혈액생화학적자료
- (사) 해부소견 및 조직병리학적 소견
- (아) 통계처리방법 및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 및 계산과정을 포함한 결과
- (자) 결과의 평가와 고찰, 결론
- (4) 참고문헌 및 기타

참고문헌, 시험결과 기초자료, 기타 필요한 자료

# 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1. 12.

○ 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가영

○ 개정사유 :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 폐지 등 개정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

- 고용노동부 고시(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57호) 폐지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 인용

- OECD 가이드라인(만성독성시험)에 따른 내용 수정